

대학원 석·박사 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4조에 따라 대학원 석·박사 통합과정(이하 “통합과정” 이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통합과정” 이라 함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과정으로 석사학위의 취득 없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.

제3조(대상학과) 통합과정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이 모두 개설되어 있는 학과에서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유형 및 지원자격) ① 통합과정 선발유형은 통합과정 유형1, 통합과정 유형2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통합과정 유형1 :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(취득예정자 포함)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
2. 통합과정 유형2 : 본 대학교 석사과정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서 석사과정 전공분야와 통합과정 지원 전공분야가 동일한 사람

제5조(선발) ① 통합과정은 매학기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며, 통합과정 유형2에 선발된 자는 통합과정 진입 전에 휴학할 수 없으며, 휴학할 경우 통합과정 합격을 취소한다.

② 통합과정의 선발인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 범위 내로 한다.

제6조(이수 학기 및 학점) 통합과정의 이수 학기 및 학점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다. 다만, 통합과정 유형2로 선발된 학생이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기와 학점은 통합과정 이수학과와 이수학점으로 모두 인정한다.

제7조(외국어 및 종합시험) 통합과정 학생의 외국어 및 종합시험은 「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 다만 통합과정 유형2로 선발된 학생이 석사과정 재학 중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은 면제하며, 종합시험은 추가로 1과목만 합격하면 이를 합격으로 인정한다.

제8조(중도포기자에 대한 조치)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석사학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「대학원 학칙」 제39조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침 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내규 제정 이전의 통합과정의 운영은 이 내규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